

## 물류센터의 손해배상 사례



구자철 | (주)TRC  
상무이사

물류관 물적유통의 준말로 여기에는 수송, 하역, 포장, 보관, 유통가공, 정보기능 등의 기능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다음에 거론되고 있는 물류센터는 물품의 도입, 저장 및 출하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창고 기능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유통센터의 저장기능 시설이나 기업의 창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비슷한 양상을 가질 수 있다.

### 1. 물류센터 손해의 특징

#### 가. 손해 관련

- (1)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주요 원인은 화재, 침수, 설해(雪害), 풍해(風害) 또는 도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해 활동자들이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 (2) 물류센터의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건물의 내화력 부족 및 발생열로 인하여 건물 및 적치되어 있는 물품이 모두 소손(燒損) 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물품의 정확한 손해 수량 및 손해액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자동화 창고인 경우 Auto-Stacker 등 시설이 손해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 (3)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수용되어 있는 물품의 소손보다 그 을음, 연기, 복사열 또는 소방활동에 따른 소화수에 의한 오염손해가 큰 경우도 있다.
- (4) 침수피해를 입는 경우는 건물의 지하 및 1층에 저장 중인 물품과 약적의 동산이 주로 피해를 입는다.
- (5) 물류센터가 천막창고 건물 등 구조적으로 약한 경우 지붕에 쌓인 눈으로 인해 건물 및 수용물품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 (6) 내풍력이 약한 건물의 지붕이 태풍 등 강풍에 날아가 건물 및 내부의

저장물품이 빗물에 젖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 (7)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할 때 화재가 발생한 경우 과실 책임이 없는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 나. 보험 관련

- (1) 화재 또는 수침 등에 의한 물품손해 발생시 이 물품의 보험가액과 보험가입 시점에 예상한 저장량에 따른 보험가입금액간 차이가 발생하여 손해를 비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 (2) 물류센터의 운영방식에 따라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배상책임이 존재할 수 있으며 보험자의 구상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 (3) 설해의 경우 화재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4) 물류센터에서 도난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비업체의 배상책임(보험)과 도난을 담보하는 보험이 중복될 수 있다.

#### 다. 기타

- (1) 임대차 계약 중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복구 관계로 임대인과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 (2) 피해를 입은 물품이 오염 등에 의한 부분손해(수리 후 사용 가능 또는 내용물은 이상이 없으나 포장재 등이 손상되어 시장가치를 상실하는 경우)인 경우 일정 부분의 가치를 가질 수 있으나 이 피해물이 유통되는 경우 정상제품이나 상품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폐기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 (3) 화재 등으로 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임대비용이나 다른 물류센터를 이용하

는 경우 물류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4) 물류센터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자재나 제품의 공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납기 문제가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 2. 물류센터의 이해관계자

물류센터의 운영은 화주(貨主)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물류 전문업체를 물류관리자로 아웃소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류를 위해 건물 등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상하차 업무, 건물의 부속 시설 관리 업무, 청소 업무 등을 아웃소싱하는 경우에는 많은 관계자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 이들 상호간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 발생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으며, 이 관계자들의 보험가입에 따른 피보험성이익이 다양해질 수 있다.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른 경우나 타 사업자의 물건을 처리하는 경우(공동물류)에도 위와 같은 보험가입 또는 손해 발생시 복잡성이 더해질 수 있다.

#### 3. 보상사례

##### 가. 사례1 (화재 손해)

###### (1) 사업개요 및 보험가입 사항

OO업체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레이트 지붕 1층 건물 2개 동을 임차하여 자사에서 생산한 생활용품의 유통센터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재고관리 및 배송업무 일체는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임차자인 OO업체는 자신의 물품만을 보험가입금액 10억원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화재손해 발생시 잔존물 제거를 위한 비용으로 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특집 | 물류센터의 화재대책

### (2) 손해 상황

건물 2개 동 중 1개 동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건물 및 수용되어 있던 물품과 △△업체 소유의 자계차 1대가 전소하였으나 나머지 건물 및 저장물품은 피해가 없었다. 화재 당시 2개 동의 건물에 수용되어 있던 물품의 보험가액은 7억원이었으며 화재손해를 입은 건물에 수용되어 있던 물품의 가액은 4억원이었다. 화재손해를 입은 물품의 수거, 상차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 (3) 보상 내용

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으므로 손해액 전액 4억원을 보상받았으며, 잔존물 제거비용 100만원이 손해액의 10%인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비용도 전액 보상되었다. 그러나 건물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되지 않았다.

### (4) 시사점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의 과실 또는 원인이 미상인 경우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지고 있다. 만일 임차 건물이 다른 보험에 계약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배상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 나. 사례 2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손해)

### (1) 사업개요 및 보험가입 사항

제지 제조업체인 OO는 공장시설 및 동산과 인근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건물 및 관련 공지를 임차하여 원부자재 및 제품을 저장하고 있었다. 임차 창고에 수용되어 있는 재고자산은 펠프 등 원자재 및 제품, 상품, 반제품 등이었다.

공장시설 및 재고자산(임차건물 수용 동산 포함)에 대하여 각각의 보험가입금액을 1,400억원 및

300억원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특약으로 시설 및 동산에 대한 풍수재로 인한 손해 및 불괴, 침강, 사태에 의한 손해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고자산은 보험료를 75%만 예치하고 매월 재고가액을 통지하여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재고가액통지 특약을 체결하였다.

### (2) 손해 상황

집중 호우로 인하여 임차한 창고의 공지에 팔레트 위에 3단으로 저장 중이던 제품이 침수되는 손해를 입었다. 손해발생 이전에 최종 통지한 재고가액은 270억원이었으며, 사고발생 후 손해조사에 의해 실제의 금액이 통지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재고자산 중 임차 창고에서 침수로 인해 입은 손해는 2억원이었으며, 손해를 입은 재고 중 1억원에 해당하는 피해 물품은 보험계약자가 생산에 재투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실손해액은 1억원이었다.

### (3) 보상 내용

손해가 발생한 재고자산의 보험가입금액(300억 원)이 보험가액(270억원) 보다 많아 실손해액 전액 1억원이 보상되었다.

### (4) 시사점

화재보험에서는 소재지 및 건물의 수용 여부가 보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재지가 증권에 명기되지 않은 장소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안될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기간 중이라도 그외에 새롭게 창고 등을 설치하여 재고자산을 저장하거나 재고량의 변화로 약적의 동산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 다. 사례 3 (폭설에 의한 손해)

### (1) 사업개요 및 보험가입 사항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OO기업은 공장부지에 소재하는 건물 및 생산 등에 필요한 시설과 동산에

대하여 패키지보험에 가입하여 재산손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담보받고 있었다.

보험계약 조건에 따라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한 재산에 대하여 신축하거나 신축으로 구입하여 가능 가능한 상태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재조달가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한 사고당 공제금액은 1,000만원이었다. 잔존률 제거 비용 및 청소비용으로 손해액의 20% 한도로 보상하는 조건도 첨부되어 있었다.

손해가 발생한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건물과 철파 이프조 천막건물의 보험가입금액은 각각 3,200만원과 1,800만원이었다.

#### (2) 손해 상황

강설량 약 20cm의 폭설로 인하여 창고 용도로 사용 중이던 200m<sup>2</sup> 면적의 1층 구조 경량철골조 건물과 1층 구조 500m<sup>2</sup> 면적의 천막창고의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수용되어 있던 재고자산은 지붕이 무너져 내린 직후 부지 내 다른 장소로 운반 및 조치되어 손해를 입지 않았다. 천막건물은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부 손해로 인정되었으나, 경량철골조 건물은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량철골조 건물을 재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3,000만원이며, 천막창고동의 재신축 비용은 2,0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경량철골조 건물의 수리에 1,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천막건물의 잔해를 제거하는데 3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잔해 제거 후 발생한 고철의 가격이 40만원이었다.

#### (3) 보상 내용

손해를 입은 천막건물은 보험계약자가 재건축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신축 후 2년의 사용에 따른 감가를 공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결정하여 1,354만원

으로 결정되었으며, 경량철골조 건물은 수리비 1,000만원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었다.

실제의 보험금은 1,354만원과 1,000만원의 합계액에서 사고당 공제액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1,354만원으로 결정되어 지급되었다.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은 1,354만원에서 잔존률 금액 4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 (4) 시사점

재조달가를 담보하는 보험에서 손해가 발생한 재산을 재조달하지 않는 경우 사용에 따른 감가를 공제한 현재가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조달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에 따른 이득이 발생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강설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패키지보험과 화재보험의 봉괴, 침강, 사태를 담보하는 특약을 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산종합보험의 잡위험 손해로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건물은 동산조합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화재보험의 풍수재를 담보하는 특약을 첨부하더라도 설해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사례 4 (태풍에 의한 손해)

#### (1) 사업개요 및 보험가입 사항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OO업체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건물에 해당하며, 건물, 기계, 설비 및 기타의 손해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480억원에 보험가입되어 있었다. 화재손해 이외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확장하여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 (2) 손해 상황

태풍 ‘사오마이’에 의하여 건물 12개 동 중에서 5개 동의 지붕 및 지붕 위 벤츄레타 등이 파손되어 수

## 특집 | 물류센터의 방재대책

리공사비와 잔존물 제거에 필요한 장비 사용료 및 철거노임을 합친 총 4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하였다. 손해가 발생한 건물의 총 보험가액은 220억원이었으나 보험가입금액은 150억원이었다.

### (3) 보상 내용

보험가액보다 보험가입금액이 적어 비례적으로 보상되었으며, 총 지급된 보험금은 손해액에 대한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결정되어 2억7천2백7십만원이 되었다.

$$(4억원 \times (150억원/220억원)) = 2.727 \text{ 억원}$$

### (4) 시사점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 손해액을 비례적으로 보상받게 되며 수리에 해당하는 손해액이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우 수리비를 감가하여 손해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보험금이 수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보험에서 재조달가를 담보받을 수 있는 특약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가상의 손해와 관련된 책임관계

다음은 배상책임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물류센터 운영 및 손해 시나리오이다.

### 가. 사업 내용

A회사에서 3층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물류센터로 운영 중 자사 제품 및 타사 제품(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른)을 취급하고 있으며, 물류 작업은 용역계약에 따라 B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물품의 상하차 및 적재 업무는 B사와 용역계약에 따라 C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이다. 센터 내에 B사의 컴퓨터 등 사무용 집기비품이 있으며, 상하차용 지게차는 C회사 소유이다. 1층은 임대인이 공장용도로, 3층은

다른 임차인이 창고 용도로 사용 중이다.

### 나. 사고 및 손해 내용

C회사 직원의 과실로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층에 적치되어 있던 물품, 지게차 1대, 건물의 일부를 소손시키고 연기가 3층으로 스며들어 3층에 있는 물품 및 건물에 오염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소화수의 1층 유입으로 인하여 1층의 임대인 생산설비 및 건물이 오염되는 손해를 입었다. 또한 화재를 진압하던 C회사 직원이 다치고, 우수관로로 유입된 소화수가 인근의 하천으로 흘러가 가두리 양식장을 오염시켜 양식 중이던 물고기 일부가 죽는 피해를 입었다.

### 다. 손해 및 책임 관계

(1) 재산손해 : A사 물품(제조원 물품 포함), B사 집기비품, C사 차량운반구, 1층 임대인 및 3층 타인의 물품

#### (2) 책임손해

- (가) A사 물품에 대한 B사의 배상책임(임차)
- (나) 임대인에 대한 A사의 배상책임(임대차 계약상)
- (다) B사 집기비품 손해에 대한 C사의 배상책임
- (라) 1층 임대인의 재산 및 3층의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음.

(마) 양식장에 대한 배상책임은 위의 (라)와 같은 양상임.

(바) 상해를 입은 C사 직원에 대한 C사 고용주의 배상책임

#### (3) 기타

- (가) 구상관계 : 일반적으로 B사의 배상금을 C사에, C사의 배상금을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구

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는 구상금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나) 판매원과 제조원과의 책임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5. 참고 사항

### 가. 물류센터에서 사고발생 시 책임 관계

- 관련 책임 :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사무관리 책임 등
-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를 손상시키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과실로 인한 화재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만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화재의 경우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임대차 또는 임차 계약이나 위임 계약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부과하여 화재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임대차계약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임차인의 재산과 임대인의 재산이 손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과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 때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은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이 경합 존재할 수 있으며, 채무 불이행은 건물 등 손상된 임차시설의 복원 비용이 화재 직전의 가치(법률에서는 교환가치라 함)를 현저히 초과하여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임차인의 시설 또는 동산과 임대인의 시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보험계약의 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임대인의 보험자가 임차인의 보험금에 대하여 구상권(청구권 대위 취득)을 행사하는 문제이다. 임대인의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압류하는 경우 임차인의 보험자는 압류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 나. 물류센터 관련 주요 보험 및 보상 손해

#### (1) 재산 손해

- 화재보험 : 화재, 풍수재, 신체손해배상(사업장이 특수건물인 경우)
- 동산종합보험 : 종합적으로 위험 담보, 설해 보상(설위험손해 담보)
- 도난보험 : 물품의 도난
- 패키지보험 : 화재, 풍수재, 도난, 설해 등을 종합적으로 담보

#### (2) 책임 손해

- 제3자 배상책임보험 : 제3자의 신체 및 재산
- 임차자 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임차자의 과실에 의한 임대인의 시설 손해를 보상(화재손해에 따른 배상책임만을 한정하여 담보할 수도 있음)
- 근로자재해 배상책임보험 : 직원의 상해 또는 질병(산재보험 초과)

#### (3) 기타

- 상해보험 : 직원의 상해
- 경비업자 배상책임보험 : 경비과실에 의한 도난 등